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346

제안년월일 : 2002년 5월 17일

제 안 자: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- o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정수가 제6대 의회에서는 25명이었으나 제7대 의회 구성의원이 22명으로 3명이 축소되므로
- o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임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
- o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목포시의회 공인조례 중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회에 두는 위원회 명칭 및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개정(안 제2조)
 - 기획총무위원회 10명
 - 경제건설위원회 11명
- 나. 상임위원회 직무·소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(안 제3조)
 - 기획총무위워회
 - 기획실, 총무국, 보건소, 상수도사업소, 문화예술회관, 향토문화관, 체육 시설관리사무소, 동소관에 관한 사항
 - 경제건설위원회
 - 경제사회국, 도시건설국, 도시개발사업소, 환경사업소, 공원관리사무소,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,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
- **3.** 개정조례안 : 별 첨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5. 관련법령

- o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제26조
- o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
- 6. 관련부서의견 : 해 당 없 음

7. 예산상황 : 해 당 없 음

8. 입법예고 : 생략

9. 사전협의사항 : 해 당 없 음

10. 기타참고사항 : 해 당 없 음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기획총무위원회 10명
- 3. 경제건설위원회 11명

제3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및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기획총무위원회
 - 가. 기획실, 총무국, 보건소, 상수도사업소, 문화예술회관, 향토문화관, 체육 시설관리사무소, 동소관에 관한 사항
- 3. 경제건설위원회
 - 가. 경제사회국, 도시건설국, 도시개발사업소, 환경사업소, 공원관리사무소,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,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

부 칙

- ①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조례의 개정) 목포시의회공인조례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3.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
 - 4.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

별표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직인 : 1.8cm
- 5.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직인 : 1.8cm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선・구조판 내미표 | |
|---|---|
| 현 행 | 개 정 안 |
| 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(생략) 1. (생략) 2. <u>총무사회위원회 12명</u> 3. 산업건설위원회 12명 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①(생략) ②(생략) 1. (생략) 2. 총무사회위원회 | 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(현행과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기획총무위원회 10명 3. 경제건설위원회 11명 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기획총무위원회 |
| 가. 기획실, 총무국, 경제사회국중 (사회복지과,환경과) 보건소, 환경사업소, 문화예술회관, 향토문화관, 시립도서관, 체육시설관리사무소,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, 동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 | 가. <u>기획실, 총무국, 보건소, 상수도사업</u> 소, 문화예술회관, 향토문화관, 체육시 |
| 3. 산업건설위원회 가. 경제사회국중 (지역경제과, 농림과, 해양수산과), 도시건설국, 공영개발사업 소, 사회근로복지관, 상수도 사업소, 공원관리사무소,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| 소, 환경사업소, 공원관리사무소, 위생매 립장관리사무소, 수질환경사업소 소 |

<u>사항</u>